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3일, 위성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개정안 제64조제1항)

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국제선박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상선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의미함¹⁾.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규정은 1999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자국 선박의 해외 치적을 방지하고, 국적선대 확충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²⁾.

해양수산부의 국적선박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박 등록 건수는 2004년 474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1,365척(국적선 687척,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678척)으로 증가하고 있음.

1)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2면·23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참고로, 전통적으로 해운업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편의치적 제도가 자리 잡았으나, 주요 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자국 해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편의치적 제도는 해운정책, 노동, 세금 및 기타 비용 등과 관련된 국가의 여러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국가에서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선박 소유권을 귀속시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관행을 의미함(김진권·홍성화, 2012)

지방세특례연구원의 2023년 연구자료³⁾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박 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외치적 선박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순톤수 기준으로는 해외치적 비중이 2014년 77.2%에서 8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지배 상선 중 대형 선박의 해외치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4.4억원(연평균 1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3)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